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80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5월 24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5월 28일(화)

2. 제출사유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프로그램 수입 처리 명시(안 제21조제4항)
- 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안 제21조제5항)
- 다. 반려견 놀이터 시설 등 이용료 정책 명시(안 제24조~제2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4. 18.~5. 8.(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4. 5. 14.)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동물’, ‘소유자 등’, ‘맹견’ 등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였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법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3. “**이용료**”란 마포구 반려동물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의무)**는 “구청장의 의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제목을 수정하였고, 인용 법조항 정비 및 약칭을 하였음. 상위법령에도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¹⁾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의2(맹견의 관리)와 안 제6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을 신설하였음.
 - 최근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6조의 2는 맹견으로 인한 인적 피해 시 소유자 등 동의 없이 격리조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
 - 안 제6조의3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명시하여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음.
- **안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은 반려동물 프로그램 수입 처리를 명시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21조제4항**은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을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 **안 제21조제5항**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함. 이미,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시비50%, 구비 50%)’은 시행 중이며, 향후 마포구가 동 사업을 확대 시행 할 경우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 바,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24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안 「별표1」은 이용료 범위를 명시함.

〈별표1. 지자체 시설 사용료(이용료) 징수 현황(제24조 관련)〉

구분	대상	이용료(대여료)	비고
반려견 놀이터	놀이기구	무료	※ 이용료 기준 - 이용일(1일)의 이용시간내 사용
반려동물 캠핑장	캠핑 데크	5,000원	
	텐트류(그늘막, 인디언텐트, 타프 등) 캠핑용품(돛자리, 의자, 테이블 등)	5,000원 ~ 10,000원 2,000원 ~ 10,000원	
반려견 샤워실	샤워기, 건조기 등	무료	

- 현재 반려견 놀이터(캠핑장)2) 이용 시 사용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바, 우리구 다른 시설 및 타 자치구 시설(캠핑장)의 사용료와 시설 형태 등을 비교해 사용료를 산정하였음.

〈지자체 시설 사용료(이용료) 징수 현황〉

지자체	조례명	조례	규칙	비고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사용료 범위 (강습료) • 문화프로그램 10,000원 ~ 100,000원 • 체육프로그램(수영) 25,000원 ~ 100,000원	없음	조례1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제4항 강습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용료는 규정장이 따로 정함
	마포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범위 • 체육관 2,000원 ~ 4,000원	• 사용료 명시(개인) - 평일 2,500원 - 주말 3,000원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이용료 범위 • 텐트 5,000원 ~ 20,000원 • 매트 1,000원 ~ 1,500원	• 이용료 명시 - 텐트 5,000원 - 매트 1,000원	
수원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설 사용료 명시 • 텐트 사이트 - 평일 10,000원 - 주말 15,000원	규칙 부존재	
안양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사용료 명시 • 캠핑장 - 평일 15,000원 - 주말 20,000원	규칙 부존재	
평택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사용료 명시 • 피크닉 테이블, 데크 : 5,000원	규칙 부존재	

2)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동물복지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항11호에서 공원 시설 중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감면) 및 안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2」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등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다만,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요청³⁾에 따라 우리구 공공시설(구립체육시설, 마포아트센터 등)의 사용료 중 다둥이 할인혜택을 정비하였는 바,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도 다둥이 할인혜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안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안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안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음.
- 그리고, 안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 그밖에,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안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안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안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안 제13조(동물의 반환 등), 안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안 제17조(출입·검사 등)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음.
- 안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는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서울특별시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정)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감면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맹견 출입금지 장소 및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이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반려가구에 대비하고 동물의 보호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개정사항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상 법률 조문 인용 및 용어·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본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개정안의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3호 중 문장 부호 오류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띄어쓰기를 정비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u>이라</u> 한다) <u>이란</u> 법제2조제3호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 ---” 이라--)” 이란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맹견” 이란 <u>법제2조제5호</u>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5. ----- <u>법 제2조제5호</u> --- -----.

- 안 제21조제3항은 용어를 통일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함.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 ③ (생 략)</p> <p>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p> <p>④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p>	<p>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문화행사</u> ----- ----- -----.</p> <p>④ ----- --- <u>관련 프로그램</u> ----- ----- -----.</p>

-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 다둥이 감면 혜택을 신설함.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5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100분의 50 감면 가. ~ 차. (생 략)</p> <p><u><신 설></u></p>	<p>제25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차. (현행과 같음)</p> <p>카. <u>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